



시 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357호 2018. 10. 29.(월)

공 고

- 목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입법예고 ----- 2
- 목포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 ----- 11

기 타

- 시정알림판 ----- 20

회람							
----	--	--	--	--	--	--	--

목포시 공고 제2018-1340호

목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목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9일

목 포 시 장

1.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목포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 법률 제12687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조례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2018년 12월 31일을 존속기한으로 봄

2. 주요내용

- 목포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함 (부칙 제1조, 제2조)
 - 특별회계 존속기한 : 2019.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까지(5년)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9조
- 주차장법 제21조의 2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

6.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평가 : 해당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7.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 : 검토 완료**8. 예산상황 : 별도 예산조치 해당 없음****9. 입법예고 : 2018. 10. 29. ~ 11. 9.****10. 사전협의(승인)사항 : 해당 없음****11.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1월 9일까지 목포시장(교통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처 : 58613, 전남 목포시 양을로 203(용당동)
목포시청 교통행정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3591), 직접방문 등

12.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 (<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교통행정과(☎061-270-83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조례 제 호

목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목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illegible]

참고 1**관계법령 발췌****지방재정법**

[시행 2018. 6. 28.] [법률 제15528호, 2018. 3. 27.,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재정정책과) 02-2100-3506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전문개정 2011. 8. 4.]

부 칙 <법률 제12687호, 2014. 5. 28.>

제4조(특별회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의 특별회계로서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정하여야 하는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 및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정하여진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약칭: 도시교통정비법)

[시행 2018. 2. 10] [법률 제14944호, 2017. 10. 24, 일부개정]

토교통부(도시광역교통과-정비계획) 044-201-3808

국토교통부(도시광역교통과-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044-201-3813

국토교통부(도시광역교통과-교통유발 부담금) 044-201-3811

제49조(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설치) ① 기본계획의 시행 및 도시교통의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에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에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2.>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1. 제35조에 따른 혼잡통행료
2.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3.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4. 그 밖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도시교통과 관련한 수입

③ 특별회계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수입금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은 제33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의 실시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9., 2013. 3. 23.>

1. 교통시설의 확충과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2. 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3.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4. 제33조와 제43조에 따른 교통수요관리와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시행
5. 도로시설과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
- ④ 특별회계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31조에서 이동 <2008. 3. 28.>]

주차장법

[시행 2018. 10. 25] [법률 제15737호, 2018. 8. 1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시광역교통과) 044-201-3811, 3814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 3. 31., 2012. 1. 17.>

1.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2.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정부의 보조금
 5.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부과·징수한 과태료
 7.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8.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징수액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광역시에 한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제1호의 수입금 및 납부금 중 해당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금
 2.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보조금
 5.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등이 부과·징수한 과태료
 6.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④ 제1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위탁수수료 외에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특별회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회계로부터 보조할 수 있다.

⑥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게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에 이 법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정(計定)은 분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22.]

참고 2**현행 조례****목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안전도시건설국 교통행정과)

1994.01.13 조례 제1696호 제정

(전부개정) 1998.02.09 조례 제1902호

(일부개정) 2009.06.01 조례 제2561호

(일부개정) 2012.12.17 조례 제2825호 목포시 조례 불합리한 용어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15.12.28 조례 제2995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 제3항

(일부개정) 2016.10.17 조례 제3056호 주차장법 시행령, 지방세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및 「주차장법」 등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목포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6·1>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법 제4조에 따라 정하는 교통권역에 대한 교통관련 사업에 한정한다.<개정 2009·6·1>

제3조 (세입)

① 이 회계는 주차장 및 기타교통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09·6·1>

1. 주·정차위반 과태료(「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관련)
2. 주차요금(「주차장법」 제9조 제1항 및 제14조 제1항 관련)
3. 주차장 관리수탁자 부담금(「주차장법」 제8조 제1항 관련)
4.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비용 납부금(「주차장법」 제19조 제5항 관련)
5.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주차장법」 제30조 관련)
6. 교통유발부담금(「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관련)
7. 자동차 검사미필등 과태료(「자동차관리법」 제84조 관련)
8. 과징금(「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 관련)
9.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0.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도시교통과 관련된 수입
11. 그 밖의 잡수입

② 제1항제9호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법」 제112조(같은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징수액의 10퍼센트 해당액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개정 2009·6·1, 2013.12.23, 2016.10.17>

제4조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에 충당한다.<개정 2009·6·1>

1. 교통행정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2. 대중교통 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3.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4. 주차장 설치, 관리 및 운영비
5.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운영비의 일부 보조
6. 노외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일부 보조 또는 융자
7.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8.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신설 2015.12.28.>
9. 그 밖의 도로시설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3.12.23, 2015.12.28>

제5조 (적립금)

주차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제4조제4호의 보조 또 용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적립할 수 있다.

제6조 (일시차입)

회계는 운영자금의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제7조 (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8조 (예비비)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예비비로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6.1 조256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모든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 칙<2012.6.11 조274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12.12.17 조278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모든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 칙<2013.12.23 조28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모든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5.12.28. 조29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0.17. 조30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목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안

○ 성 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목포시 공고 제2018-1345호

목포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목포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9일

목 포 시 장

1.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목포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 법률 제12687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조례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2018년 12월 31일을 존속기한으로 봄

2. 주요내용

- 목포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함 (제7조, 부칙 제1조)
 - 특별회계 존속기한 : 2019.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까지(5년)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9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

6.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평가 : 해당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7.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 : 검토 완료

8. 예산상황 : 별도 예산조치 해당 없음

9. 입법예고 : 2018. 10. 29. ~ 11. 9.

10. 사전협의(승인)사항 : 해당 없음

11.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1월 9일까지 목포시장(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처 : 58613, 전남 목포시 양율로 203(용당동)

목포시청 사회복지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3676), 직접방문 등

12.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 (<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사회복지과(☎061-270-33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조례 제 호

목포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제8조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존속기한)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7조(존속기한)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u>
<u>제7조 (생 략)</u>	<u>제8조 (현행 제7조와 같음)</u>

참고 1**관계법령 발췌****지방재정법**

[시행 2018. 6. 28.] [법률 제15528호, 2018. 3. 27.,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재정정책과) 02-2100-3506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전문개정 2011. 8. 4.]

부 칙 <법률 제12687호, 2014. 5. 28.>

제4조(특별회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의 특별회계로서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정하여야 하는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 및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정하여진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약칭: 지방기금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재정정책과) 02-2100-3518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7. 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전문개정 2011. 5. 30.]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시행 2018. 8. 1] [보건복지부령 제586호, 2018. 8. 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94

제28조(기금의 관리·운용)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급여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의 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금을 교부한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부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기금운용상 증감조정이 필요한 때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로부터 교부받은 기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이하 "기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정·운용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대지급금의 상환, 부당이득금의 징수 등으로 교부받은 기금이 소요비용을 초과하여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3.>

⑤시장·군수·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계정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시·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시·도지사는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의료급여비용심사위탁수수료, 수급권자전산관리위탁수수료, 급여비용지급위탁수수료 및 의료급여의 적정성평가 위탁수수료 등 소요비용을 의료급여기금계정에 계상하여야 한다.

⑦법 제26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7. 3. 27., 2008. 3. 3., 2010. 3. 19., 2012. 11. 21.>

1.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비용
2. 법 제5조의2에 따른 사례관리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
3. 수당·일용잡급·국내여비·교육비·수용비·수수료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물품구입비(이하 "행정경비"라 한다). 이 경우 행정경비는 당해연도 기금지출액의 10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⑧시·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기금계정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⑨의료급여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법·영 및 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1. 12. 31.>

목포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안전행정부지국 사회복지과)

(일부개정) 2004.10.02 조례 제2239호

(일부개정) 2005.07.28 조례 제2275호

(일부개정) 2010.03.29 조례 제2625호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

(일부개정) 2012.06.11 조례 제2740호 목포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3조의 의료급여수급권자(이하 “급여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11·10, 2005·

7·28>

제2조 (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97·11·10, 2005·7·28>

제3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기금업무담당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기금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 97·11·10, 98·9·29, 98·12·31, 2004·10·2, 2005·7·28, 2006·8·7, 2010·3·29, 2012·6·11>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12·6·11>

제4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제115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97·11·10, 2012·6·11>

제5조 (수입)

①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97·11·10>

②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2·6·11>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회계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7·11·10>

제6조 (지출)

①기금운용관은 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 진료기관의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회계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그중 대불금은 대불금 상환대장에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 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7·11·10, 2005·7·28, 2012·6·11>

②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목포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97·11·10, 2012·6·11>

제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8·2·12 조8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9·3·29 조8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 <81·8·26 조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8·7·19 조13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2·3·23 조16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11·10 조18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9·29 규19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③(생략)

부 칙 <98·12·31 규194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④(생략)

부 칙 <2004·10·2 조22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7·28 조22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8·7 조2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3·29 조26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 <2012·6·11 조274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목포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 성 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시 정 알 림 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확대됩니다!



- 신청기한 : 2018. 12. 14.(금)까지
- 확대 대상 사업장
 - 만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300인 미만 사업장
 -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300인 미만 사업장
 - 장애인 재활시설·자활기업·사회적기업
- 지원요건 : 월 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 1개월 이상 고용,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5억원 초과 고소득 사업주(개인은 사업소득금액, 법인은 당기순이익 기준) 등 제외

- 신청방법 : 사회보험3공단 EDI(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 EDI,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고용센터 ☎ 1350

2018년 하반기 검정고시 시험 대비(스마트교실) 안내

- 운영기간 : 2018. 9월~12월
- 신청기한 : 연중 수시 모집(정원 초과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운영대상 : 만9세~24세 검정고시 응시 예정자
- 비 용 : 무 료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 목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www.youth.mokpo.go.kr)다운로드 후 센터 방문 접수
- 운영안내



과정	내 용	요일 /시간	정원	교육 장소
중학교 졸업과정	· 기초학습 수준 진단 및 학습전략 습득 · 학습 멘토 연결 통한 1:1멘토링 · 검정고시 자료 및 동영상 지원 · 센터 내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기회 우선 제공	매주 화, 목 (14:00~16:00)	20명	본 센터 교육실
고등학교 졸업과정	· 중학교 졸업과정과 동일 · 강사지원(수학, 영어, 한국사)	매주 월, 수, 금 (13:30~16:30)	20명	

※ 초등학교 졸업 과정은 본 센터와 상의 후 멘토 학습 가능

목포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 061-284-0924

시 정 알 림 판

2018 김대중 마라톤대회 개최



- 일 시 : 2018. 12. 9.(일) 09:30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앞
- 접수기간 : 2018. 11. 23(금)까지
- 신청종목 : 가족코스(5km, 학생부), 건강코스(10km), 하프코스, 풀코스
- 접수방법 : 온라인(www.djmarathon.co.kr), 전화(061-980-9632), 팩스(980-9633), 이메일(kdjmarathon@daum.net)
- 참가비 : 풀, 하프, 10km - 30,000원, 5km - 15,000원

김대중마라톤대회 조직위원회 ☎ 061-980-9632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지원사업 안내

- 신청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9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 다만 19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은 다른 국가건강검진과 중복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혈액검사, 간염검사(B형 및 C형), 결핵 검사 및 구강검사 등 (본인부담 없음)
- 신청방법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꿈드림 홈페이지(www.kdream.or.kr) 지역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 전화(유선 1388, 휴대전화 061-1388)를 통해 문의

목포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061-284-0924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전면 시행

- 시행일자 : 2019. 1. 1.부터
-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국내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등록된 농약 이외는 잔류허용기준을 일률 기준(0.01ppm)으로 관리하는 제도
- 농가 협조사항
 - 경험에 의한 농약 선택보다 작물보호제 지침서 준수
 - 농약별 등록된 작목 및 적용대상에만 사용
 - 농약 사용 시기 및 사용 횟수 준수
 - 농약 포장지 표기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사용



농업산업과 ☎ 061-270-3574